

울산지방법원 2017. 4. 5 선고 2016가단59630 판결 [부동산가압류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17. 2. 22.

판결 선고2017. 4. 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3. 3. 21. 접수 제20256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유재현

별지